

울산광역시북구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기 관 의 장
람	

제 1232 호 2020. 5. 7.(목)

조 례

-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1137호[울산광역시 북구 상징물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1
-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1138호[울산광역시 북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16

규 칙

- 울산광역시 북구 규칙 제555호[울산광역시 북구 구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19

고 시

-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20-74호[공유수면 점용·사용(변경)허가 고시]..... 24
-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20-75호[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고시]..... 25
-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20-76호[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27
-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20-77호[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고시]..... 29

공 고

-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0-559호[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30
-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0-564호[울산광역시 북구 치매안심센터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39
-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0-567호[2020-2021년 어장이용개발계획 승인사항 공고]..... 45
-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0-570호[울산광역시 북구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 규칙 일부개정 입법예고] 47
-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0-571호[울산광역시 북구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 일부개정 입법예고] 54

안 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복구 공보는 매주 목요일 발행되오니 공보게재 의뢰는 전주 수요일까지 공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긴급한 내용은 사전에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복구 전자공보 확인방법 ☞ 복구 홈페이지(www.bukgu.ulsan.kr) → 구정소식 → 알림마당 → 복구공보
--------	---

회 람								
--------	--	--	--	--	--	--	--	--

발행 : 울산광역시 복구 편집 : 기획홍보실(☎241-7125, 행정7125)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에서 의결된 울산광역시 북구 상징물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이등권 (인)

2020년 5월 7일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1137호

울산광역시 북구 상징물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울산광역시 북구 상징물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상징물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북구를 상징하는 상징물을 정하여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상징물”이란 울산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를 상징하는 구기, 휘장, 브랜드슬로건, 캐릭터, 동물, 식물 등을 말한다.

제3조(상징물의 종류) 상징물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기: 별표 1
2. 휘장: 별표 2
3. 브랜드슬로건: 별표 3
4. 캐릭터: 별표 4
5. 구목(느티나무)· 구화(참나리)· 구조(산까치): 별표 5

제4조(상징물 심의위원회 설치) ①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상징물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상징물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상징물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2. 상징물 관련 사업에 관한 사항
3. 상징물 관련 사업의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의 위원회의 기능은 「울산광역시 북구 구정조정위원회」가 이를 대행한다.

제5조(상징물의 사용 및 관리 등) ① 구청장은 상징물이 그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되고 품위가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구기는 구 또는 구민 전체의 행사장에 게양하며 그 밖에 구청장이 지정한 날에도 게양한다.

③ 구기의 관리 및 게양 등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 특별히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대한민국국기법」을 준용한다.

④ 제3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상징물을 사용할 때에는 구청장이 정한 매뉴얼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제6조(상징물의 관련 사업 등) ① 구청장은 상징물을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응용상품의 개발 또는 제작
2. 주요사업이나 행사 등에 활용
3. 상징물을 활용한 수익사업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상징물 관련 사업은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상징물의 사용신청) ① 상징물을 활용하여 물품 등을 제작하거나 행사에 사용하려는 자는 별지 서식의 상징물 사용(변경)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구청장은 상징물 사용(변경)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상징물 사용자가 상징물의 사용 목적에 위배되거나 품위를 손상시키는 경우에는 사용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제8조(사용료) ① 상징물의 사용자는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상징물의 사용료 및 사용료의 감면에 대하여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다.

제9조(사용료의 반환) 납부한 사용료는 승인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① 사용료의 과오납이 있는 경우

② 사용승인을 받은 자가 사용일 전날까지 그 사용승인의 취소를 요청하는 경우

③ 그 밖의 정당한 사유로 반환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구기(제3조제1호 관련)



1. 구기의 규격 (가로:세로 = 3:2)

- 가. 깃면의 길이(가로)와 너비(세로)는 3대2의 비례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 나. 크기는 용도에 따라 적의 조정한다.
- 다. 깃면의 심벌마크와 로고타입의 구성은 위 그림과 같이 한다.

2. 색상

- 가. 기본 색상은 다음과 같이 한다.

- (1) 바탕색은 흰색
- (2) 원형의 윗부분은 녹색(C80%+Y100%)
- (3) 원형의 아랫부분은 청색(C100%+M60%)
- (4) 조그만 원은 주황색(M50%+Y100%)
- (5) 글자는 검은색

- 나. 구기는 용도에 따라 심벌마크 등을 단색으로 제작, 사용할 수 있다.

3. 표현내용

- 가. 전체 둥근 원은 북구 구민의 화합을 의미

- 나. 위의 녹색 부분과 아래의 청색부분은 북구의 지역적 특색인 산과 바다를 함께 지니고 있다는 것을 표현

- 다. 중간의 주황색 둥근 원은 동해의 일출과 희망의 태양 및 북구에 위치한 자동차 산업등 공업의 메카를 의미.

4. 작도법

- 가. 심벌마크 및 로고타입을 작도 시 제판용 원고를 이용하여 사진 제판에 의한 축소, 확대 방법으로 사용한다.

나. 이 방법이 불가피한 경우 본 항에 제시된 비례 규정에 따라 작도하여 사용한다.



【별표 2】

휘장(심벌마크)(제3조제2호 관련)

1. 색상

가. 기본 색상은 다음과 같이 한다.

- (1) 바탕색은 흰색
- (2) 원형의 윗부분은 녹색(C 80% + Y 100%)
- (3) 원형의 아랫부분은 청색(C 100% + M 60%)
- (4) 조그만 원은 주황색(M 50% + Y 100%)

나. 구기는 용도에 따라 심벌마크 등을 단색으로 제작, 사용할 수 있다.

2. 표현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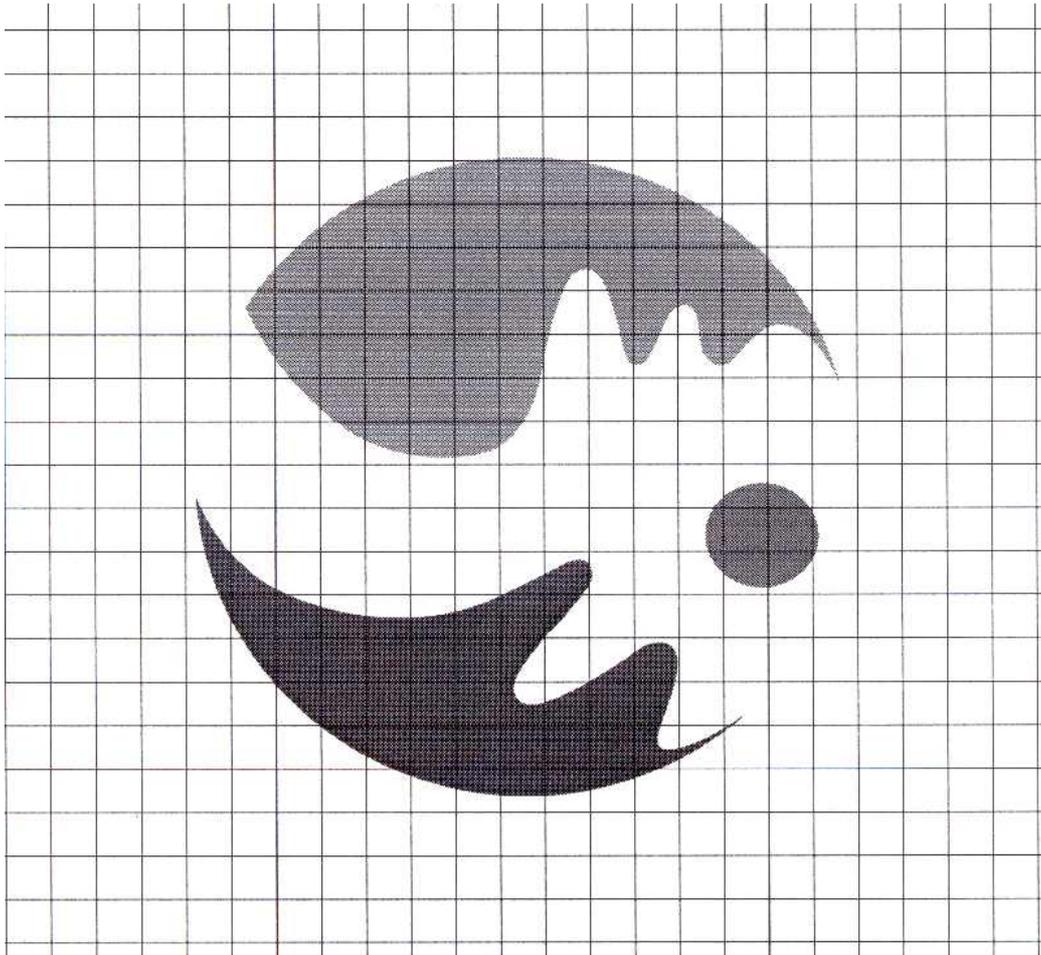
가. 전체 둥근 원은 북구 구민의 화합을 의미

나. 위의 녹색 부분과 아래의 청색부분은 북구의 지역적 특색인 산과 바다를 함께 지니고 있다는 것을 표현

다. 중간의 주황색 둥근 원은 동해의 일출과 희망의 태양 및 북구에 위치한 자동차 산업등 공업의 메카를 의미

3. 작도법

- 가. 심벌마크 및 로고타입을 작도 시 제판용 원고를 이용하여 사진 제판에 의한 축소, 확대 방법으로 사용한다.
- 나. 이 방법이 불가피한 경우 본 항에 제시된 비례 규정에 따라 작도하여 사용한다.



【별표 3】

브랜드슬로건(제3조제3호 관련)



1. 색 상

가. 기본색상은 다음과 같이 한다.

Main Color

Sub Color

Bulkot Nuri RED
Four Color Processing : M100%+Y90%+K20%
Pantone 711 C

Bulkot Nuri YELLOW
Four Color Processing : M50%+Y90%
Pantone 1375 C

Bulkot Nuri ORANGE
Four Color Processing : M80%+Y100%
Pantone 1665 C

Bulkot Nuri GREEN
Four Color Processing : C100%+M30%+Y100%+K10%
Pantone 347 C

ECOB BLACK
K100%

나. 브랜드슬로건은 용도에 따라 단색으로 하여 제작·사용 할 수 있다.

2. 표현내용

- 가. 불꽃누리 울산복구는 밤에는 불 테마도시, 낮에는 꽃 테마도시를 의미하며 세상을 뜻하는 '누리'를 조합해서 미래성장의 도시 이미지를 표현
- 나. 불의 'ㅂ'과 꽃의 'ㅈ'에 쇠부리를 상징하는 불, 구화인 참나리를 시각화 요소로 적용하고 캘리그래피 로고타입을 통해 불이 피어오르고 꽃이 피어나는 역동적인 도시 이미지를 표현

3. 작도법

- 가. 브랜드슬로건 작도 시 제판용 원고를 이용하여 사진 제판에 의한 축소, 확대방법으로 사용한다.
- 나. 이 방법이 불가피한 경우 본 항에 제시된 비례 규정에 따라 작도하여 사용한다.



【별표 4】

캐릭터(제3조제4호 관련)



1. 색 상

가. 기본색상은 다음과 같이 한다.

CMYK	RGB	Pantone
○ White	○ White	○ White
● M80, Y100, K80	● R84, G10	● 4695U
● M90, Y100	● R231, G56, B13	● Red 032U
● M50, Y100	● R242, G150	● Orange 021U
● C80, Y100	● G166, B60	● 361U
● C100, M50	● G104, B182	● Process Blue U
● K44	● R172, G172, B172	● Cool Gray 8U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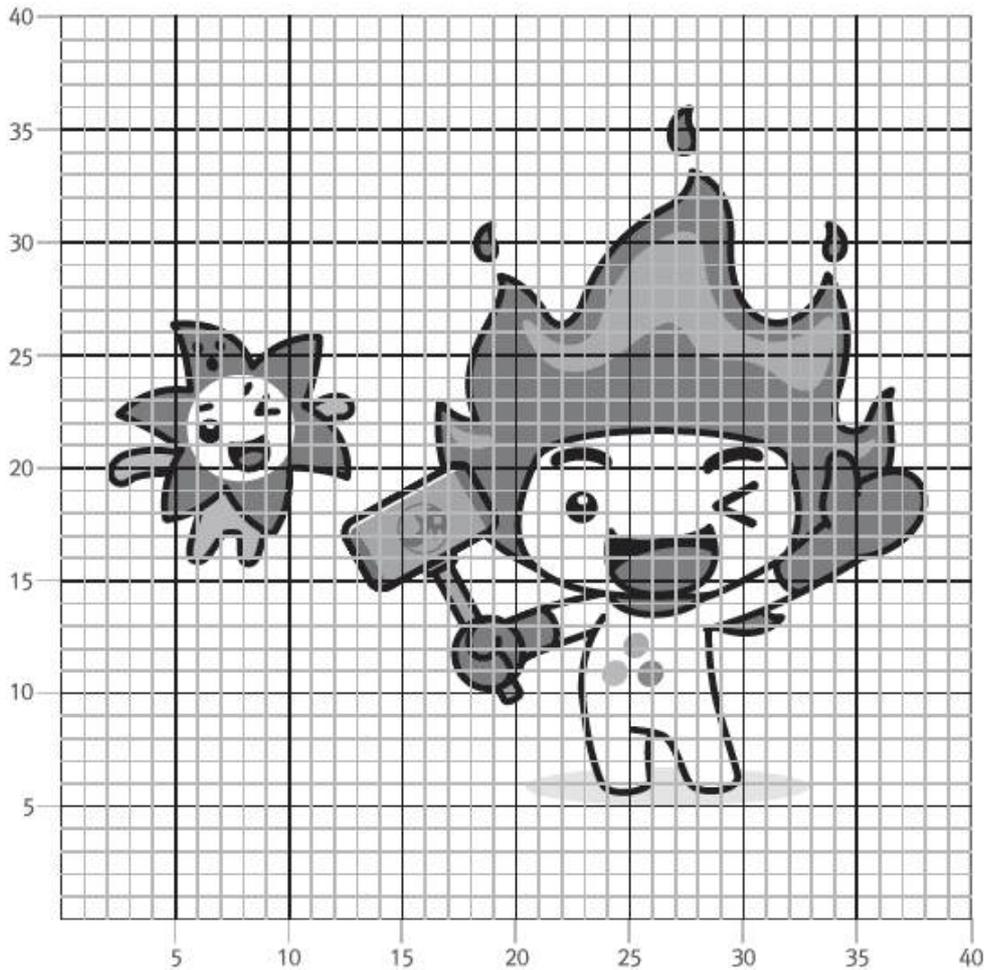
나. 캐릭터는 용도에 따라 단색으로 하여 제작·사용 할 수 있다.

2. 표현내용

- 가. 메인캐릭터 쇠부리는 울산 북구의 대표축제인 ‘울산 쇠부리 축제’를 상징하며, 철 제련 시 필요한 용광로의 타오르는 불처럼 뜨거운 열정을 지닌 구민을 상징적으로 표현
- 나. 서브캐릭터 참나리는 청초, 우아함과 순결을 의미하는 울산 북구의 상징 꽃으로, 성장 가능한 울산 북구의 맑고 푸른 미래, 행복과 번영을 상징적으로 표현
- 다. 메인캐릭터가 들고 있는 망치는 전통적으로 쇠를 다루는 도구로써 4차 산업을 주도하는 디지털방망이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표현

3. 작도법

- 가. 캐릭터 작도 시 제판용 원고를 이용하여 사진 제판에 의한 축소, 확대 방법으로 사용한다.
- 나. 이 방법이 불가피한 경우 본 항에 제시된 비례 규정에 따라 작도하여 사용한다.



【별표 5】

구 목 · 구 화 · 구 조(제3조제5호 관련)



○ 구 목 : 느티나무

느티나무는 화합, 번영, 안정성과 강한 생명력을 상징하는 장수성 나무로써 복구의 힘찬 번영과 도약을 의미하며 미래를 선도하는 복구의 희망을 상징함



○ 구 화 : 참나리

참나리꽃은 청초 우아함과 순결함을 지닌 꽃으로 번식력이 강하여 신설 복구의 깨끗함과 번영을 상징함



○ 구 조 : 산까치

산까치는 친숙성과 아름다움을 함께 갖추고 있으며 자연환경과 잘 어울리는 새로 더불어 사는 복구의 희망과 친환경성으로 자연과 함께 하는 이미지를 상징함.

[별지 서식]

(앞면)

상징물 사용(변경)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관리번호

접수일자

신청인	성 명 (대 표 자)		생 년 월 일	
	상 호 (법 인 명)		사 업 자 등 록 번 호	
	주 소 (소 재 지)		성 별	
	전 화 번 호		전 자 우 편 주 소	
사용 상징물				
사용 기간				
사용 목적				
사용 내용 (구체적으로)				

「울산광역시 북구 상징물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상징물 사용(변경)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사용(변경)계획서 1부.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수수료 없음
		1.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의 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m²)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 울산광역시 북구 상징물(브랜드슬로건, 캐릭터)이 새로이 개발됨에 따라 구 상징 공식 도시브랜드 이미지로 사용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상징물 활용 및 관리의 효율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상징물 목적, 정의, 종류(제1조 ~ 제3조)
- 나. 상징물 심의위원회 설치(제4조)
- 다. 상징물의 사용 및 관리, 상징물의 관련사업 등 규정
(제5조 ~ 제6조)
- 라. 상징물의 사용승인, 사용료 규정(제7조 ~ 제9조)
- 마. [별지 서식] 상징물 사용(변경) 신청서 서식 개정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에서 의결된 울산광역시 북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이등권 (인)

2020년 5월 7일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1138호

울산광역시 북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에 따라 화재로부터 구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화재예방 환경을 조성하고 공공기관 및 다중이용시설 등에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를 비치하는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방연마스크”란 화재에 의하여 발생하는 일산화탄소 등의 유독가스와 연기를 거를 수 있도록 제조되어 화재 장소에서 피난 또는 대피에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
2. “안전교육”이란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안전교육을 말한다.

제3조(비치장소)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방연마스크 비치 및 표지 부착을 권장 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
2.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3.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4.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제4조(교육지원) 구청장은 화재 관련 안전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을 실시하도록 지원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직접 실시할 수 있다.

제5조(홍보) 구청장은 방연마스크 비치 및 화재 예방과 효율적 대피방법 등에 대하여 직접 또는 유관단체와 협력하여 홍보와 캠페인 등을 추진할 수 있다.

제6조(예산지원)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구에서 관리하거나 위탁하는 시설 등에 방연마스크 구입 및 비치에 필요한 비용 또는 물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

1. 제정이유

○ 화재 사고에 대비하여 조작성 간편한 방연마스크 비치 활성화를 통하여 국민들의 생명 보호 및 신체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고, 화재 예방과 효율적 대피방법의 홍보를 통해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제1조 ~ 제2조)
- 나. 방연마스크 비치에 관한 사항(제3조)
- 다. 교육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제4조 ~ 제5조)
- 라.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제6조)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에서 의결된 울산광역시 북구
구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이등권 (인)

2020년 5월 7일

울산광역시 북구 규칙 제555호

울산광역시 북구 구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울산광역시 북구 구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부터 제5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제5조의2(선정 대리인 신청) 조례 제5조의3제2항에 따른 울산광역시 북구 선정
대리인 신청서는 별지 제4호의2서식에 따른다.

제5조의3(선정 대리인 통지) 조례 제5조의3제4항에 따른 울산광역시 북구 선정
대리인 신청 결과 통지는 별지 제4호의3서식에 따른다.

제5조의4(선정 대리인 사건 명세) 조례 제5조의3제5항에 따른 이의신청등의 청구
또는 신청일자·선정 대리인·결정내용 등 사건의 기록·관리는 별지 제4호의
4서식에 따른다.

별지 제4호의2서식부터 별지 제4호의4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4호의3서식]

선정 대리인 신청 결과 통지

① 신청인용

○ 신청인 : ○○○ 귀하

1. 울산광역시 북구 선정 대리인 지원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귀하가 '00.00.00. 제출한 「울산광역시 북구 선정 대리인 신청서」를 검토한 결과 귀하는 (재산·소득요건 미충족)의 사유로 울산광역시 북구 선정 대리인 지원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2. 울산광역시 북구 선정 대리인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귀하가 '00.00.00. 제출한 「울산광역시 북구 선정 대리인 신청서」를 검토한 결과 귀하의 신청내용이 적법한 것으로 판단되어 다음과 같이 울산광역시 북구 선정 대리인을 선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1) 울산광역시 북구 선정 대리인

성 명		자 격	
사 무 실			
연 락 처	(전화)		, (휴대폰)

2) 문의사항이 있을 때에는 ○○○과 ○○○(☎ -)에게 연락하시면 친절하게 지정내역을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② 선정 대리인용

○ 울산광역시 북구 선정 대리인 : ○○○ 귀하

신청인 ○○○님이 '00.00.00. 제출한 「울산광역시 선정 대리인 신청서」를 검토한 결과 신청내용이 적법한 것으로 판단되어 다음과 같이 귀하를 울산광역시 선정 대리인으로 선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1) 신청 접수건

신 청 인(청구인)		접수(사건)번호	
과세기간·세목· 청구세액		연 락 처	
주 소			

2) 문의사항이 있을 때에는 ○○○과 ○○○(☎ -)에게 연락하시면 친절하게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년 월 일

울 산 광 역 시 북 구 청 장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 「지방세기본법」의 개정으로 영세한 납세자가 비용 부담 없이 이의 신청등의 불복절차에서 세무 대리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이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선정 대리인 신청서 신설(제5조의2)
- 나. 선정 대리인 통지서 신설(제5조의3)
- 다. 선정 대리인 사건 명세서 신설(제5조의4)

울산광역시 복구 고시 제2020 - 74호

공유수면 점용·사용(변경)허가 고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6항 및 제17조제5항 동법 시행령 제9조 규정에 따라 공유수면 점·사용을 허가 하고 그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5월 7일

울산광역시 복구청장

1. 허가 연월일 : 2020. 5. 1.
2. 점용·사용의 목적 :
 - 당초 : 인공구조물 설치(콘크리트 포장 A=3m², 우수관 매설 L=15m)
 - 변경 : 인공구조물 설치(콘크리트 포장 A=3m², 우수관 매설 L=16m)
3. 점용·사용의 장소 : 달천동 892-18번지 외 1필지
4. 점용·사용의 면적 및 기간
 - 가. 면 적 - 당초 : 13m²[달천동 892-18(8m²), 892-1(5m²)]
 - 변경 : 13m²[달천동 892-18(12m²), 892-1(1m²)]
 - 나. 기 간 - 2019. 03. 04. ~ 2023. 05. 31.
5. 점용·허가를 받은 자의 성명 및 주소
 - 가. 성 명 : (주)신명산업**
 - 나. 주 소 : 울산광역시 중구 **로 731, 103호

울산광역시 복구 고시 제2020-75호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고시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결을 얻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지방자치법 제133조제2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 5. 7.

울산광역시 복구청장

의회 의결일자 : 2020. 5. 4.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		기정액		비교증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총 계	426,540,844	100.00%	373,435,078	100.00%	53,105,766	14.22%
일반회계	422,739,169	99.11%	370,976,966	99.34%	51,762,203	13.95%
특별회계	3,801,675	0.89%	2,458,112	0.66%	1,343,563	54.66%
기타특별회계	3,801,675	0.89%	2,458,112	0.66%	1,343,563	54.66%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187,362	0.04%	171,191	0.05%	16,171	9.45%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77,643	0.02%	76,100	0.02%	1,543	2.03%
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	1,754	0.00%	1,754	0.00%	0	0.00%
주차장특별회계	3,534,916	0.83%	2,209,067	0.59%	1,325,849	60.02%

□ 일반회계 세입내역

(단위 : 천원)

장·관	예산액		기정액		비교증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총 계	422,739,169	100.00 %	370,976,966	100.00 %	51,762,203	13.95%
100 지방세수입	75,637,000	17.89 %	75,637,000	20.39 %	0	0.00%
110 지방세	75,637,000	17.89 %	75,637,000	20.39 %	0	0.00%
200 세외수입	25,302,642	5.99 %	23,290,199	6.28 %	2,012,443	8.64%
210 경상적세외수입	17,561,789	4.15 %	17,976,843	4.85 %	△415,054	△2.31%
220 임시적세외수입	7,740,853	1.83 %	5,313,356	1.43 %	2,427,497	45.69%
300 지방교부세	12,296,000	2.91 %	11,416,000	3.08 %	880,000	7.71%
310 지방교부세	12,296,000	2.91 %	11,416,000	3.08 %	880,000	7.71%
400 조정교부금등	50,770,720	12.01 %	45,060,720	12.15 %	5,710,000	12.67%
410 자치구조정교부금등	50,770,720	12.01 %	45,060,720	12.15 %	5,710,000	12.67%
500 보조금	237,440,478	56.17 %	204,302,553	55.07 %	33,209,925	16.26%
510 국고보조금등	158,755,563	37.55 %	135,707,378	36.58 %	23,048,185	16.98%
520 시·도비보조금등	78,684,915	18.61 %	68,595,175	18.49 %	10,161,740	14.71%
700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21,292,329	5.04 %	11,270,494	3.04 %	10,021,835	88.92%
710 보전수입등	20,672,373	4.89 %	10,700,000	2.88 %	9,972,373	93.20%
720 내부거래	619,956	0.15 %	570,494	0.15 %	49,462	8.67%

□ 일반회계 세출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전년도예산액		비교증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총 계	422,739,169	100.00 %	370,976,966	100.00 %	51,762,203	13.95 %
010 일반공공행정	18,420,966	4.36 %	17,744,676	4.78 %	676,290	3.81 %
020 공공질서및안전	3,269,225	0.77 %	1,767,654	0.48 %	1,501,571	84.95 %
050 교육	3,342,665	0.79 %	837,825	0.23 %	2,504,840	298.97 %
060 문화및관광	29,642,082	7.01 %	24,276,914	6.54 %	5,365,168	22.10 %
070 환경	11,672,404	2.76 %	11,915,747	3.21 %	△243,343	△2.04 %
080 사회복지	221,194,347	52.32 %	198,386,584	53.48 %	22,807,763	11.50 %
090 보건	9,925,293	2.35 %	9,211,460	2.48 %	713,833	7.75 %
100 농림해양수산	26,151,168	6.19 %	21,150,281	5.70 %	5,000,887	23.64 %
110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4,242,408	1.00 %	2,729,903	0.74 %	1,512,505	55.41 %
120 교통및물류	13,489,986	3.19 %	9,315,148	2.51 %	4,174,838	44.82 %
140 국토및지역개발	23,166,604	5.48 %	15,017,065	4.05 %	8,149,539	54.27 %
160 예비비	2,608,310	0.62 %	3,117,014	0.84 %	△508,704	△16.32 %
900 기타	55,613,711	13.16 %	55,506,695	14.96 %	107,016	0.19 %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20 - 76호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우리구 관내 건물에 대하여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건물에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5월 7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 도로명주소 : 울산광역시 북구 박상진2로 82 외 12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별지 참조)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북구 민원지적과 (☎052-241-7583,7585)에 문의 또는 울산광역시 북구청 홈페이지(www.bukgu.go.kr) 및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 (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20. 5. 7.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 있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조서

순번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고시일	도로명부여사유	도로명 고시일
1	울산광역시 북구	화봉동 1486	울산광역시 북구	박상진2로 82	2020-05-07	독립운동가 박상진 명칭 사용	2018-05-10
2	울산광역시 북구	송정동 1194-4	울산광역시 북구	송정21길 1	2020-05-07	옛 지명으로 현재도 사용	2018-05-10
3	울산광역시 북구	송정동 1176-5	울산광역시 북구	박상진7로 21	2020-05-07	독립운동가 박상진 명칭 사용	2018-05-10
4	울산광역시 북구	매곡중산 지구 32B 12L	울산광역시 북구	신기15길 18	2020-05-07	신기3길인근위치연계성반 영하여일련번호부여	2018-05-10
5	울산광역시 북구	당사동 504-3	울산광역시 북구	용바위1길 46	2020-05-07	용바위가있는길에위치하여 도로명을부여하였다.	2004-08-09
6	울산광역시 북구	신천동 335-6	울산광역시 북구	호계로 314	2020-05-07	호계동에소재하는도로로법 정동인호계동의이름반영하 여부여	2001-03-22
7	울산광역시 북구	화봉동 1442-10	울산광역시 북구	화동로 44-7	2020-05-07	자연부락명칭을사용해서도 로명을부여하였다.	2010-04-27
8	울산광역시 북구	시례동 137-3	울산광역시 북구	동산길 174	2020-05-07	동대마을명칭을사용해서도 로명을부여하였다.	2004-08-09
9	울산광역시 북구	어물동 1011	울산광역시 북구	황토전길 126-15	2020-05-07	자연부락명칭을사용해서도 로명을부여하였다.	2010-04-27
10	울산광역시 북구	송정동 1152-9	울산광역시 북구	송정4길 4	2020-05-07	옛 지명으로 현재도 사용	2018-05-10
11	울산광역시 북구	대안동 567	울산광역시 북구	동남로 429-29	2020-05-07	동에서남쪽으로가로지르는 도로라서동남로로부여	2011-02-11
12	울산광역시 북구	매곡중산 지구 28B 4L	울산광역시 북구	신기16길 3	2020-05-07	신기3길인근위치연계성반 영하여일련번호부여	2018-05-10
13	울산광역시 북구	매곡동 907-2	울산광역시 북구	당수골6길 16	2020-05-07	당수나무가있는당수골명칭 사용하여서도로명을부여함	2017-05-04

울산광역시 복구 고시 제2020 - 77호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고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6항 동법 시행령 제9조 규정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를 하고 그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5월 7일

울산광역시 복구청장

1. 점용·사용허가 연월일 : 2020. 05. 04.
2. 점용·사용의 목적 : 인공구조물 설치(사방시설물 설치)
3. 점용·사용의 장소 : 호계동 936-263번지 일원
4. 점용·사용의 면적 및 기간
 - 가. 면 적
 - 영구 : 1,044㎡
 - 나. 기 간
 - 영구 : 2020. 05. 04. ~ 2049. 05. 31.
5. 점용·허가를 받은 자의 성명 및 주소
 - 가. 성 명 : 울산광역시 복구청장 (공원녹지과)
 - 나. 주 소 : 울산광역시 복구 산업로 1010

울산광역시 복구 공고 제2020-559호

울산광역시 복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울산광역시 복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개정 이유와 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제1항 및 『울산광역시 복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7일

울산광역시 복구청장

1. 개정이유

- 상위법(령)과 중복되는 조항 삭제 및 직원 복지 증진 및 가정 친화적 근무여건 강화를 위해 보육휴가 및 자기계발휴가 조항 신설
- 기타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개선·보완

2. 주요내용

- 상위법(령)(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과 중복되는 조항 삭제
 - 현행 조례 제6조, 제20조제2항·제5항, 제24조제2항제1호
- 자녀 양육이 필요한 공무원을 위해 보육휴가 신설(안 제24조제2항제7호)
 - 만4세 이하 자녀 1명 → 3일
 - 만4세 이하 자녀 2명 이상 → 6일
- 충분한 휴식과 재충전의 기회 제공을 위해 연간 3일의 자기계발 휴가 신설(안 제24조제2항제8호)
- 군 입영 자녀 휴가일수 및 사유 확대(안 제24조제2항제5호)
 - (현행) 자녀 입영 당일 1일 → (개정) 자녀 군(軍) 훈련소 입·퇴소 시 각각 1일

○ 포상휴가 사유 구체적 명시(안 제24조제2항제6호)

- 재난·재해, 각종 행사, 선거업무 등 구체적 명시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라 용어 정비

3. 관계법령 :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 5. 27.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참조 : 총무과장)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 1)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2)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3) 기타 참고사항 등

다. 제 출 처 : 우)44248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10(연암동, 북구청)

【울산광역시 북구 총무과 전화 : 052)241-7203, 팩스 : 052)241-7209】

5. 기타사항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울산광역시 북구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으며, 직접 방문하여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안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59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6조를 삭제한다.

제20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구청장은 연가계획 수립 시 공무원이 자유롭게 연가를 사용하여 몸과 마음을 새롭게 하고, 일과 가정생활의 만족도를 높여 직무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20조제2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연가원의 제출”을 “연가 신청”으로, “없는 한”을 “없으면”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삭제한다.

제2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구청장은 공무원이 결혼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신청에 따라 별표 3의 기준에 따른 경조사 휴가를 주어야 한다.

제24조제2항제1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 중 “얻”을 “받”으로 하며, 같은 조 같은 항 제5호 중 “입영 당일 ”을 “자녀의 훈련소 입소·퇴소 당일 각각 ”으로 한다.

제24조제2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구청장은 재난·재해, 각종 행사, 선거업무 등 노고가 인정되거나 주요시책 및 현안사업 등 직무수행에 탁월한 성과를 거둔 공무원에게 5일 이내의 포상휴가를 줄 수 있다.

제24조제2항제7호 및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4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공무원은 자녀 보육에 필요한 경우 연간 3일(4세 이하의 자녀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연간 6일을 말한다)의 범위에서 보육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부부공무원의 경우에는 부부가 합산하여 연간 3일(4세 이하의 자녀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연간 6일을 말한다)의 보육휴가를 받을 수 있다.

8. 구청장은 공무원에게 충분한 휴식과 재충전의 기회 부여를 위해 연간 3일의 자기계발휴가를 줄 수 있으며, 이 경우 기준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u>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u></p> <p>제6조(근검, 절약)</p> <p>① <u>공무원은 화목 단결하여 직장분위기를 명랑하게 조성하여야 한다.</u></p> <p>② <u>공무원은 소박하고 검소한 생활을 영위하여 모범적인 가정을 이룩하여야 한다.</u></p> <p>제20조(연가계획 및 허가)</p> <p>① <u>구청장은 공무원의 연가가 특정한 계절에 편중되지 아니하고 공무원 및 그 배우자의 부모생신일 또는 기일이 포함되도록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u></p> <p>② <u>제19조의 연가일수가 7일을 초과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연 2회 이상으로 나누어 허가한다. 다만, 제27조에 따른 공무 외의 국외여행, 그 밖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u></p> <p>③ (생 략)</p> <p>④ <u>구청장은 공무원으로부터 연가원의 제출이 있을 때에는 공무수행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u></p> <p>⑤ <u>공무상 제19조에 따른 연가를 허가할 수 없거나 해당 공무원이 연가를 활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연가일수에 해당하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고 연가에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가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는 연가대상일수는 20일을 초과할 수 없다.</u></p> <p>⑥ (생 략)</p>	<p>제1조(목적) ----- 「지방공무원법」 제59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p> <p style="text-align: center;"><u><삭 제></u></p> <p>제20조(연가계획 및 허가)</p> <p>① <u>구청장은 연가계획 수립 시 공무원이 자유롭게 연가를 사용하여 몸과 마음을 새롭게 하고, 일과 가정생활의 만족도를 높여 직무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u></p> <p style="text-align: center;"><u><삭 제></u></p> <p>③ (현행과 같음)</p> <p>④ -----연가 신청-----</p> <p style="text-align: center;">-----없으면-----.</p> <p style="text-align: center;"><u><삭 제></u></p> <p>⑥ (현행과 같음)</p>

붙임	관련법령
-----------	-------------

[지방공무원법]

제53조(청령의 의무) ①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사례(謝禮)·증여 또는 향응을 주거나 받을 수 없다.

② 공무원은 직무상 관계가 있든 없든 그 소속 상사에게 증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증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8. 12. 31.]

제55조(품위 유지의 의무) 공무원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8. 12. 31.]

제59조(위임규정) 공무원의 복무에 필요한 사항은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 외에는 대통령령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연가일수 및 연가보상비의 지급) ④ 제1항에 따른 연가를 공무상 허가할 수 없거나 해당 공무원이 연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연가일수에 해당하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연가를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가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는 연가 대상일수는 20일을 초과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10. 7. 15.]

제7조의7(특별휴가) ① 공무원의 특별휴가는 이 영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이 영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결혼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신청에 따라 별표 1의 기준에 따른 경조사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7. 4. 25.>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임신 중인 공무원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하되, 출산 후의 휴가기간이 45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임신 중인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출산휴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출산 전 어느 때라도 가장 44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59일)의 범위에서 출산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6. 30.>

1.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 외의 인공 임신중절에 의한 유산은 제외한다. 이하 제3호를 제외하고 같다)·사산의 경험이 있는 경우
2. 임신 중인 공무원이 출산휴가를 신청할 당시 연령이 만 40세 이상인 경우

3.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사산의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④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에 그 공무원이 신청하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유산휴가 또는 사산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4. 6. 30., 2019. 12. 31.>

1. 임신기간이 15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10일까지
2.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
3.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
4.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남성공무원의 배우자가 유산하거나 사산한 경우 해당 공무원이 신청하면 제4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중 3일의 유산휴가 또는 사산휴가를 주어야 한다. <신설 2019. 12. 31.>

⑥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 시술을 받는 공무원은 시술 당일에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체외수정 시술의 경우 여성공무원은 남자 채취일에 1일의 휴가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개정 2018. 12. 18., 2019. 12. 31.>

⑦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은 1일 2시간의 범위에서 휴식이나 병원 진료 등을 위한 모성보호 시간을 받을 수 있다. <신설 2013. 5. 31., 2018. 12. 18., 2019. 12. 31.>

⑧ 5세 이하의 자녀를 가진 공무원은 24개월의 범위에서 자녀돌봄, 육아 등을 위한 1일 최대 2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다. <신설 2017. 4. 25., 2018. 12. 18., 2019. 12. 31.>

⑨ 자녀가 있는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연간 2일(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3일)의 범위에서 자녀돌봄휴가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18. 12. 18., 2019. 12. 31.>

1.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이하 "어린이집등"이라 한다)의 공식 행사 또는 교사와의 상담에 참여하는 경우

2. 어린이집등에 재학 중이거나 「민법」상 미성년자인 자녀의 병원 진료(「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 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른 예방접종을 포함한다)에 동행하는 경우

⑩ 여성공무원은 생리기간 중 휴식을 위해 매월 1일의 여성보건휴가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여성보건휴가는 무급으로 한다. <신설 2019. 12. 31.>

⑪ 여성공무원은 임신기간 중 검진을 위해 10일의 범위에서 임신검진휴가를 받을 수 있다.
 <신설 2019. 12. 31.>

제7조의11(10일 이상 연속된 연가 사용의 보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제7조제1항에 따른 연가 일수 또는 제7조의 10제1항에 따른 저축연가 일수를 활용하여 10일 이상 연속된 연가 일수 사용을 신청한 경우에는 공무 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이를 허가해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연가 사용에 따른 업무대행자 지정, 인력 보충 등 원활한 업무 수행과 자유로운 연가 사용 보장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본조신설 2019. 12. 31.>

울산광역시 복구 공고 제2020-564호

울산광역시 복구 치매안심센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입법예고

「울산광역시 복구 치매안심센터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7일

울산광역시 복구청장

1. 제정이유

치매예방 및 치매환자에 대한 관리·지원, 치매안심센터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 제2조)
- 나. 치매관리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다. 치매관리 지원 대상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라. 치매관리 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마. 치매안심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바. 지역사회협의체에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8조, 제9조)

3. 근거법령 : 「치매관리법」 제3조

4. 제정조례안 : 붙임참조

5.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5월 27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참조: 보건소)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라. 제출처

- 주소: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18, 북구보건소

- 전화번호: 052-241-8137, 팩스번호: 052-241-8109

6. 기타사항

「울산광역시 북구 치매안심센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정안은 울산광역시 북구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으며, 직접 방문하여 열람하실 수도 있습니다.

[붙임]

울산광역시 북구 치매안심센터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치매관리법」에 따른 치매의 예방과 치매환자에 대한 관리·지원 및 치매안심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치매로 인한 개인의 고통을 줄이고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치매”란 퇴행성뇌질환 또는 뇌혈관계 질환 등으로 기억력, 언어능력, 지남력(指南力), 판단력 및 수행능력 등의 기능이 저하됨으로써 일상생활에서 지장을 초래하는 후천적인 다발성 장애를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치매환자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치매관리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구청장은 「치매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의 치매관리에 관한 종합계획에 따라 치매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 및 평가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치매의 예방·관리를 위한 기본시책
2. 치매검진사업 추진계획 및 추진방법
3. 치매환자의 치료·보호 및 관리
4. 치매에 대한 홍보·교육
5. 치매환자와 그 가족에 대한 교육 및 지원
6. 그 밖에 치매관리에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단체·시설 등에 자료제공 및 업무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5조(지원 대상) 구청장은 울산광역시 북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주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원할 수 있다.

- 1. 만 60세 이상의 구민
- 2. 치매환자
-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6조(비용의 지원) 구청장은 치매관리사업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1. 치매검진사업에 따른 비용
- 2. 치매환자의 의료지원에 따른 비용
- 3. 치매관리사업에 필요한 전문 인력의 교육·훈련 비용
- 4. 치매관리사업을 수행하는 단체의 교육 및 홍보 비용
- 5. 그 밖에 치매관리와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제7조(치매안심센터 설치·운영) ①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치매예방과 치매환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치매안심센터(이하 “치매안심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 ② 치매안심센터의 장은 보건소장으로 한다.
- ③ 치매안심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1. 치매 관련 상담 및 조기검진
- 2. 치매환자의 등록·관리
- 3. 치매등록통계사업의 지원
- 4. 치매의 예방·교육 및 홍보
- 5. 치매환자를 위한 단기쉼터의 운영
- 6. 치매환자의 가족지원사업
- 7. 치매환자 실종예방사업 지원
- 8. 그 밖에 치매관리에 필요한 업무

제8조(지역사회협의체의 설치 및 구성) ① 구청장은 치매관리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치매안심센터 지역사회협의체(이하 “지역사회협의체”라 한다)를 둔다.

- 1. 치매안심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 2. 지역사회 단체 및 자원 간 연계·협력에 관한 사항
- 3. 그 밖에 치매관리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지역사회협의체의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2. 지역사회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위원의 성별구성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른다.

가. 치매 관련 전문가

나. 치매관리사업 관련기관·단체 임직원

다. 치매환자 가족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9조(지역사회협의체의 운영) ① 위원장은 지역사회협의체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지역사회협의체의 회의는 연 2회 이상 개최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서면회의로 대체할 수 있다.

④ 지역사회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치매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한다.

제10조(비밀누설의 금지) 이 조례에 따라 치매관리사업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역사회협의체 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위촉된 울산광역시 북구 치매안심센터 지역사회협의체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제출서]

의 건 제 출 서

의견 제출자	성명/단체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호	
	주 소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의견과 그 이유 등을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울산광역시 복구 공고 제2020 - 567호

2020/2021년 어장이용개발계획 승인사항 공고

「수산업법」 제4조 및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에 의거 2020/2021년 어장이용개발계획 승인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어업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는 관계 서류를 구비하여 2020. 6. 5.(금)까지 면허의 우선순위 결정신청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020. 5. 7.

울산광역시 복구청장

1. 어장이용개발계획 승인사항

구 분	면허종류	양식어업의 종류	양식물	면적 (ha)	수면위치	승인조건
재개발	복합양식	수하식	미역 우렁챙이	5	어물동 지선	조건부 승인

2. 승인조건

가. 어업면허 처분 시 수산관계법령 및 관련규정·요령 등을 준수하여야 함

나. 어장이용개발계획이 승인된 수면이라도 아래 각 호에 해당될 경우 어업면허를 처분하지 아니 함

-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개발계획 승인 취소 또는 어업면허를 제한할 필요가 있거나, 여건 변화 등으로 어업면허를 처분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되었을 경우
- 2) 어장 간 분쟁이 발생될 우려가 있거나, 분쟁이 발생되었을 경우
- 3) 개발되는 양식어장에 대하여 어장청소를 실시하지 않을 경우
- 4) 양식품목이 양식재해보험 대상이면서 양식재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

하는 경우

※ 대상은 양식어업재해보험 대상물에 한함

5) 면허를 받으려는 수면이 다른 어업권의 어장구역 또는 보호구역과 겹치는 경우에 어업권자의 동의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3. 신청기간 : 2020. 5. 7. ~ 6. 5.

4. 장 소 : 울산광역시 북구청 2층 농수산과

5. 제출서류

가. 면허의 우선순위결정신청서 1부

나. 「수산업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수산기술자의 자격 또는 경력 등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수산기술자만 해당) 1부

다. 신청일 현재 취득하고 있는 어업면허증 또는 어업허가증 사본(어업의 면허 또는 허가를 받은 자만 해당) 각 1부

라. 어업에 종사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어업에 종사한 자만 해당) 1부

마. 포기하려는 어업권의 면허증 사본(「수산업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포기하려는 자만 해당) 1부

바. 여권 사본 등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인 경우만 해당) 1부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북구 농수산과(☎052-241-8092)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0-570호

울산광역시 북구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 규칙 일부개정 입법예고

「울산광역시 북구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 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 절차법」 제41조제1항 및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7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개정이유

제9조(환수) 조항과 관련하여 상위법령의 내용과 일치하도록 관련 조항을 정비함

2. 주요내용

제9조(환수) “지방세의 부과·징수 및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를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따라”로 개정

3. 근거법규

가. 「청소년 보호법」 제49조

나. 「지방재정법」 제2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09조, 제111조 ~ 제113조

4. 의견제출

가. 이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0년 5월 27일까지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참조: 가족정책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 1) 예고된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2) 성명(단체일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 3) 기타 참고사항 등

다. 제출처: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10, 북구청 가족정책과
[북구청 가족정책과 전화 (052) 241-7674, 팩스(052) 241-7659]

5. 그 밖의 사항

개정규칙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울산광역시 북구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으며, 직접 방문하셔도 열람이 가능합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울산광역시 북구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규칙안 내용	의 견	비 고

울산광역시 북구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울산광역시 북구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지방세 부과·징수 및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를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따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9조(환수) 포상금을 지급한 후 에 제6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 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포상금 이 지급된 경우에는 <u>지방세 부 과·징수 및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u> 기 지급된 포상금을 환 수한다.</p>	<p>제9조(환수) ----- ----- ----- ----- 「<u>지방재정 법 시행령</u>」에 따라 ----- ----- -----.</p>

관련 법규

[청소년 보호법]

제49조(신고)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누구든지 그 사실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생각되는 매체물과 약물 등이 청소년에게 유통되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을 때
 2. 청소년에게 유해한 업소에 청소년이 고용되어 있거나 출입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을 때
 3. 그 밖에 이 법을 위반하는 사실이 있다고 인정할 때
-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시행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신고자 포상 등을 할 수 있다

[지방재정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채권"이란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권리를 말한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09조(적용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에 대하여는 제110조 내지 제133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과태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채권
2. 지방세와 그 가산금 및 체납처분에 관한 채권
3. 증권으로 된 채권
4.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에 대한 예금에 관한 채권
5. 일상경비출납원 및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이 예탁한 예금에 관한 채권
6. 보관금이 될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
7. 보조금 또는 기부금에 관한 채권
8. 외국 또는 국제기구를 채무자로 하는 채권
9. 외국의 대사·공사 그 밖에 외교관이나 이에 준하는 자에 대한 채권

제110조(채권의 발생 또는 귀속의 보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당해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채권이 발생하였거나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었음을 지체 없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법령 또는 조례·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채권이 발생하거나 채권이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될 원인이 되는 계약 그 밖의 행위를 할 자가 당해 행위를 한 때. 다만, 채권의 발생 또는 귀속에 있어서 정지조건이나 시기가 있는 때에는 조건이 성취되거나 기한이 도래함으로써 채권이 발생 또는 귀속하였을 때를 말한다.
2. 법령 또는 조례·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를 위하여 지출원인행위를 하는 자가 당해 지출원인행위의 결과 반납금에 관한 채권이 발생된 것을 안 때

- 3.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외에 법령 또는 조례·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를 위하여 계약을 하는 자가 당해 계약에 관하여 채권이 발생하였거나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한 것을 안 때
- 4. 제1호 내지 제3호의 경우 외에 현금 또는 물품의 출납원이나 공유재산에 관한 사무를 행하는 자가 그 취급에 속한 재산에 관하여 채권이 발생한 것을 안 때

제111조(납부의 고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채무이행의 청구를 하기 위하여 당해채권의 이행기한 15일 전까지 납부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의 고지를 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채권의 금액·이행기한 그 밖의 내용이 법령 또는 계약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신고납부에 의한 채권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12조(독촉)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채권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가 제111조 규정된 납부의 고지로 지정하는 기한(납부의 고지를 요하지 아니하는 채권에 대하여는 이행기를 말한다)을 경과하여도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독촉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1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행기한을 연장하는 경우 및 제129조의 규정에 의한 화해로 이행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연장기한 만료 후에 독촉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독촉장은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발부하고, 독촉에 의한 납부기한(이하 "독촉기한"이라 한다)은 독촉장 발부일부터 15일 이내로 정하여야 한다.

제113조(강제이행의 청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행기를 경과한 채권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가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독촉을 한 후 독촉기한이 경과하여도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조치를 하여야 한다.

- 1. 담보부채권(보증인의 보증이 있는 채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는 당해 채권의 내용에 따라 그 담보의 처분, 경매 그 밖의 담보권행사에 관한 절차의 이행 또는 보증인에 대한 이행의 청구
- 2. 집행권원이 있는 채권에 대하여는 강제집행청구절차의 이행
-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채권에 대하여는 소송절차에 의한 이행의 청구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0-571호

울산광역시 북구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 일부개정 입법예고

「울산광역시 북구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 및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7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개정이유

현행 규칙에서 과징금 감경기준과 관련하여 상위법령의 내용과 일치 시키고 일부 규정을 개선·보완 등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상위법령 과징금의 부과기준에 따라 정비(안 제3조, [별표])
- 상위법 제명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
 - 안 제2조제2호, 안 제4조제3호, 안 제6조제1항, 안 제6조제3항
- 일부규정 개선·보완(안 제4조제2호, 안 제4조제3호, 안 제6조제1항)
- 제5조(감경범위 및 기준) 전부 삭제
- [별지 제1호서식] ~ [별지 제3호서식] 일부 변경

3. 근거법규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44조

4. 의견제출

가. 이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0년 5월 27일까지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참조: 가족정책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 1) 예고된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2) 성명(단체일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3) 기타 참고사항 등

다. 제출처: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10, 북구청 가족정책과
[북구청 가족정책과 전화 (052) 241-7674, 팩스(052) 241-7659]

5. 그 밖의 사항

개정규칙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울산광역시 북구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으며,
직접 방문하셔도 열람이 가능합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울산광역시 북구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규칙안 내용	의 견	비 고

울산광역시 북구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울산광역시 북구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울산광역시 북구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을 “울산광역시 북구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으로 한다.

제2조제2호 중 “청소년보호법위반자”를 “법 위반자”로, “범한”을 “하여 적발된”으로 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감경기준) ① 법 위반자에 대하여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별표의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기준에 따라 감경한다.

② 감경기준이 중복될 경우에는 그 중에서 부과대상자에게 유리한 하나만을 적용한다.

제4조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법 위반으로 이미 부과된 과징금이나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경우

3. 「행정절차법」 제27조의 규정에 따른 의견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감경결정을 위한 증빙자료의 제출에 따르지 않는 경우

제5조를 삭제한다.

제6조제1항 중 “별지 제1호서식의 청소년보호법”을 “별지 제1호서식의 「청소년 보호법」”으로, “감경신청서를”을 “감경신청서를 「행정절차법」에 따른 의견제출기한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청소년보호법위반”을 “「청소년 보호법」 위반”으로, “별지 제3호서식의 청소년보호법”을 “별지 제3호서식의 「청소년 보호법」”으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제2호서식, 제3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 style="text-align: center;"><u>울산광역시 북구 청소년보호법</u> <u>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u></p> <p>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생 략) 2. “<u>청소년보호법위반자</u>” 라 함은 「<u>청소년 보호법 시행령</u>」(이하 “<u>영</u>” 이라 한다) 제44조제2항 별표11의 위반행위를 <u>범한</u> 사람을 말한다. <p>제3조(감경대상) ① <u>법 위반과징금 부과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감경대상이 될 수 있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국민기초생활 보장법</u>」에 의한 <u>수급자</u> 2. 「<u>한부모가족지원법</u>」에 따른 <u>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u> 3. 「<u>장애인복지법</u>」에 의거 등록된 <u>장애인</u> 4. 「<u>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u>」에서 정한 <u>국가유공자</u> 5. <u>풍수해 등 자연재해 피해자</u> 	<p style="text-align: center;"><u>울산광역시 북구 청소년 보호법</u> <u>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u></p> <p>제2조(정의) -----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현행과 같음) 2. “<u>법</u> <u>위반자</u>” ----- ----- ----- --- <u>하여 적발된</u> ---. <p>제3조(감경기준) ① <u>법 위반자에 대하여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별표의 「<u>청소년 보호법</u>」 위반 과징금 감경기준에 따라 감경한다.</u></p> <p>② <u>감경기준이 중복될 경우에는 그 중에서 부과대상자에게 유리한 하나만을 적용한다.</u></p>

(위반일 전 1년 이내의 피해자)

6. 법 제2조제1호에 의한 청소년

7. 만65세 이상의 노인

8. 본인 또는 가족(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중 중증질환자가 있어 생계유지가 곤란한 자

9. 사법기관으로부터 기소·선고유예의 처분을 받은 자

10. 상대방의 위계 및 강박에 의한 위반자

11. 위반횟수가 1회인 경우

②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중복될 때에는 감경비율이 높은 기준을 적용한다.

제4조(감경 제외 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징금의 감경대상에서 제외한다.

1. (생략)

2.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고 체납액이 있는 사람

3. 「행정절차법」 제27조의 규정에 따른 의견 제출을 하지 아니한 사람

제4조(감경 제외 대상) -----

-----.

1. (현행과 같음)

2. 법 위반으로 이미 부과된 과징금이나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경우

3. 「행정절차법」 제27조의 규정에 따른 의견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감경결정을 위한 증빙자료의 제출에 따르지 않는 경우

제5조(감경범위 및 기준) 영 제44조제3항에 따라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는 감경대상 및 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6조(감경절차 등) ① 과징금을 감경 받고자 하는 사람은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생략)

③ 구청장은 과징금 감경결정을 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청소년보호법위반 과징금 감경결정서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별지 제3호서식의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처리관리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삭 제>

제6조(감경절차 등) ① -----

----- 별지 제1호서식의 「청소년 보호법」 -----
감경신청서를 「행정절차법」
에 따른 의견제출기한까지 ---
-----.

② (현행과 같음)

③ -----
----- 「청소년 보호법」 위반 -----
----- 별지 제3호서식의 「청소년 보호법」 ---

-----.

신 · 구별표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과징금 감경 기준 및 증명 서류(제5조)

감경대상	감경비율 (%)	감경사유	증명 서류
1.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50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취지를 살려 감경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증명서
2.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	50	「한부모가족지원법」의 취지를 살려 감경	한부모가족증명서
3. 장애인	1급 ~ 3급	「장애인복지법」의 취지를 살려 감경	장애인 증명서 또는 장애인복지카드 사본
	4급 ~ 6급		
4. 국가유공자	50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취지를 살려 감경	국가유공자 증서 또는 확인서
5. 풍수해 등 자연재해 피해자	50%이상	재해구호 차원에서 감경	피해 사실 확인서
	20%이상 ~50%미만		
6. 청소년	50	비경제활동 연령자에 대한 배려적 차원에서 감경	신분증
7. 만 65세 이상 노인	50	비경제활동 연령자에 대한 배려적 차원에서 감경	신분증
8. 본인 또는 가족 중 중증 질환자가 있어 생계유지가 곤란한 사람	50	중증질환 치료에 따른 생계유지 곤란자에 대한 배려 (암 등의 질환으로 생명에 지장이 있거나 중증난치병으로 장기치료를 받고 있는 경우)	의료기관의 진단서, 입원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생계유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9. 기소·선고유예자	50	처벌의 일관성확보 관점에서 감경	기소·선고유예 증명서류
10. 상대방의 위계 및 강박에 의한 위반자	50	청소년의 협박 등 강박으로 인한 위반자의 정상참작	
11. 위반횟수가 1회인 경우	50	최초 위반에 따른 정상 참작	

[별표]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기준 (제3조 관련)

1. 공통기준

- 가. 위반사항에 대하여 검사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거나 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 50퍼센트 감경
- 나. 과징금 부과 대상자가 청소년 보호법 위반행위로 최초 처분을 받게 된 경우 50퍼센트 감경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과징금 금액	위반정도에 따른 적용 감경률		
		50퍼센트	30퍼센트	20퍼센트
1. 영리를 목적으로 법 제16조 제1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청소년유해매체물을 판매·대여·배포, 시청·관람·이용에 제공한 경우	·위반 횟수마다 제조업자 1,000만원, 유통관련업자 100만원	·판매 등 금액이 1만원 미만	·판매 등 금액이 1만원 이상 ~ 3만원 미만	·판매 등 금액이 3만원 이상 ~ 5만원 미만
2. 영리를 목적으로 법 제22조를 위반하여 외국매체물을 유통하게 한 경우	·위반 횟수마다 1,000만원	·매체물 수량이 10개 미만	·매체물 수량이 10개 이상 ~ 30개 미만	·매체물 수량이 30개 이상 ~ 50개 미만
3. 법 제28조제1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법 제2조제4호가목1)의 주류 또는 같은 목 2)의 담배를 판매한 경우	·위반 횟수마다 주류판매자 100만원, 담배판매자 100만원	·주류·담배 판매액이 1만원 미만	·주류·담배 판매액이 1만원 이상 ~ 3만원 미만	·주류·담배 판매액이 3만원 이상 ~ 10만원 미만
4. 법 제28조제1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법 제2조제4호가목4)의 환각물질 또는 같은 목 5)의 약물 또는 나목의 청소년유해물건을 판매·대여·배포한 경우	·위반 횟수마다 100만원	·판매액이 1만원 미만	·판매액이 1만원 이상 ~ 3만원 미만	·판매액이 3만원 이상 ~ 10만원 미만

현 행

개 정 안

위반행위	과징금 금액	정도에 따른 적용 감경률		
		50퍼센트	30퍼센트	20퍼센트
5. 법 제29조제1항을 위반하여 법 제2조제5호가목 및 이 영 제6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업소에 청소년을 고용한 경우	·1명 1회 고용마다 1,000만원	·기소유예, 선고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	-	-
6. 법 제29조제1항을 위반하여 법 제2조제5호나목 1)·2)·4)·5)·6)·7)에 해당하는 업소 또는 이 영 제6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업소에 청소년을 고용한 경우	·1명 1회 고용마다 500만원	·기소유예, 선고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	-	-
7. 법 제29조제2항을 위반하여 법 제2조제5호가목에 해당하는 업소에 청소년을 출입시킨 경우	·출입허용 횟수마다 300만원	·출입 인원이 3인 미만	·출입 인원이 3인 이상 ~ 7인 미만	·출입 인원이 7인 이상 ~ 10인 미만
8. 법 제30조제7호를 위반하여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을 거리에서 유인하는 행위를 하게 한 경우	·위반 횟수마다 300만원	·기소유예, 선고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	-	-
9. 법 제30조제8호를 위반하여 청소년에 대하여 남녀혼숙을 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 행위를 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한 경우	·위반 횟수마다 300만원	·기소유예, 선고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	-	-
10. 법 제30조제9호를 위반하여 주로 차 종류를 조리·판매하는 업소에서 청소년으로 하여금 영업장을 벗어나 차 종류를 배달하는 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조장 또는 묵인한 경우	·위반 횟수마다 1,000만원	·기소유예, 선고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	-	-

현 행

개 정 안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결정서(제6조제3항)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결정서

신 청 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업 소 명 (소재지)		
	위반일 자	위반내용	
감 경 처 분	감경사 유		
	감경내 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당초 부과금액 : 과징금 원 감경 부과금액 : 과징금 원 (감경률 : %)	

신 청 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업 소 명 (소재지)		
	위반일자	위반내용	
감 경 처 분	감경사유		
	감경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당초 부과금액 : 과징금 원 감경 부과금액 : 과징금 원 (감경률 : %)	

「울산광역시 북구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 제6조제3항에 의하여 위와 같이 감액결정 되었음을 통지합니다.

「울산광역시 북구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 제6조제3항에 의하여 위와 같이 감액결정 되었음을 통지합니다.

※ 유의사항

1. 귀하의 사유를 참작하여 위와 같이 과징금 감경결정을 하였으니 앞으로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향후 위반행위가 있을 때에는 「청소년 보호법」 제5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규정에 의하여 엄중한 처분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 유의사항

1. 귀하의 사유를 참작하여 위와 같이 과징금 감경결정을 하였으니 앞으로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향후 위반행위가 있을 때에는 「청소년 보호법」 제5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규정에 의하여 엄중한 처분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년 월 일

울 산 광 역 시 북 구 청 장

울 산 광 역 시 북 구 청 장

관련 법령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44조(과징금의 부과기준)

- ① 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10과 같다.
- ② 법 제54조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11과 같다.
- ③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위반행위의 내용·정도·기간, 위반행위로 인하여 얻은 이익 등을 고려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이를 감경할 수 있다.
- ④ 시장·군수·구청장이 법 제54조제3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는 과징금 부과·징수 대상자가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변조 또는 도용으로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인하여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어 불기소 처분이나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경우로 한다.

[행정절차법]

제27조(의견제출)

- ① 당사자등은 처분 전에 그 처분의 관할 행정청에 서면이나 말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제출을 할 수 있다.
- ② 당사자등은 제1항에 따라 의견제출을 하는 경우 그 주장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자료 등을 첨부할 수 있다.
- ③ 행정청은 당사자등이 말로 의견제출을 하였을 때에는 서면으로 그 진술의 요지와 진술자를 기록하여야 한다.
- ④ 당사자등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의견제출 기한까지 의견제출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